

##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금융회사가 설립한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이 영 제8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외국법인(당해 외국법인의 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을 설립한 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 외국법인의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2. 당해 외국법인의 향후 3년간의 배당계획서
3. 당해 외국법인에의 투자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및 동 경비조달계획서
4. 당해 외국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이사회 의사록

제3조제4항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외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면제하

되, 다음 각 1)부터 3)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감독원장은 이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부적격인 경우

2) 중대한 소송사건의 발생, 소재지국의 법령 위반으로 인한 감독당국이나 사법기관의 제재조치가 있는 경우

3) 합병 및 최대주주의 변경, 영업양수도 등 경영관리상 중대한 변경사항이 예정된 경우

제3조제6항 중,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의 지점·자회사 또는 손회사”를 “외국법인”으로 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미화 2,000만불(투자금 지급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투자 금액을 포함한다) 이내의 경우에는 투자금의 지급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보고할 수 있다.

제7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역외집합투자기구 투자시, 금융회사 투자금의 변동없이 발생한 지분율 변동의 경우에는 보고 의무를 면한다.

제9조제2항 “비은행금융기관이”를 “금융회사가”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외지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에는 해당 행위 후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3조제2항·제4항·제6항, 제7조제1항, 제1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신고·보고 사유가 발생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설립되어 시행 당시  
에 운영중인 역외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의 "금융기관", "해외직접투자", "현지법인금융기관", "현지법인", "해외지사", "역외금융회사", "신고등" 등 용어의 정의는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다.</p> <p>제3조(해외직접투자)</p> <p>② 금융기관이 설립한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이 영제8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외국법인(당해 <u>현지법인의 손회사를 포함한다</u>)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을 설립한 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해 <u>지점·자회사 또는 손회사의</u>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li> <li>2. 당해 <u>자회사 또는 손회사의</u> 향후 3년간의 배당계획서</li> <li>3. 당해 <u>지점의 설치·자회사 또는 손회사에의</u> 투자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및 동 경비조달계획서</li> <li>4. 당해 <u>자회사 또는 손회사의 최근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사회 의사록</u></li> </ol>	<p>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의 "금융회사", "해외직접투자", "현지법인금융기관", "현지법인", "해외지사", "역외금융회사", "신고등" 등 용어의 정의는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다.</p> <p>제3조(해외직접투자)</p> <p>② 금융회사가 설립한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이 영제8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외국법인(당해 <u>외국법인의 자회사를 포함한다</u>)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을 설립한 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해 <u>외국법인의</u>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li> <li>2. 당해 <u>외국법인의</u> 향후 3년간의 배당계획서</li> <li>3. 당해 <u>외국법인에의</u> 투자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및 동 경비조달계획서</li> <li>4. 당해 <u>외국법인의</u>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이사회 의사록</li> </ol>

현 행	개 정 안
<p>④ 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제2호의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은 각 투자신고(보고)서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제1항에서 금융기관의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 감독원장을 경유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다).</p> <p>1. 금융·보험업 이외의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p> <p>나. 주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lt;단서 신설&gt;</p>	<p>④ 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제2호의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는 각 투자신고(보고)서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제1항에서 금융회사의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 감독원장을 경유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다).</p> <p>1. 금융·보험업 이외의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p> <p>나. ----- ----- -----. 다만, 해외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 평가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면제하되, 다음 각 1)부터 3)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감독원장은 이를 요청 할 수 있다.</p> <p>1)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부적격인 경우</p> <p>2) 중대한 소송사건의 발생, 소재지국의 법령 위반으로 인한 감독당국이나 사법기관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p> <p>3) 합병 및 최대주주의 변경, 영업양수도 등 경영관리상 중대한 변경사항이 예정된 경우</p>

현 행	개 정 안
<p>⑥ 금융기관이 제2항에 따라 보고한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의 지점·자회사 또는 손회사의 보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들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법제20조제1항에 따라 변경(청산)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변경(청산)보고를 하여야 한다.</p> <p>제7조(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p> <p>① 금융기관이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단서 신설&gt;</p> <p>④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를 한 자가 당해 신고(보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역외금융회사를 청산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등 변경(청산)보고서를 변경(청산) 사유가 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단서 신설&gt;</p>	<p>⑥ 금융회사가 제2항에 따라 보고한 당해 외국법인의 보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들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법제20조제1항에 따라 변경(청산)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변경(청산)보고를 하여야 한다.</p> <p>제7조(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p> <p>① 금융기관이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화 2,000만불(투자금 지급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투자 금액을 포함한다) 이내의 경우에는 투자금의 지급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보고할 수 있다.</p> <p>④ ----- ----- ----- ----- ----- ----- ----- ----- --. 다만, 역외집합투자기구 투자시, 금융회사 투자금의 변동없이 발생한 지분율 변동의 경우에는 보고 의무를 면한다.</p>

현 행	개 정 안
제9조(해외지점의 영업기금)	제9조(해외지점의 영업기금)
② 국내에 본점을 둔 <u>비은행금융기관이</u> 제1항에 의한 영업기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내에 본점을 둔 <u>금융회사가</u> 제1항에 의한 영업기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해외지점의 영업활동 등)	제12조(해외지점의 영업활동 등)
② 해외지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u>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u>	② 해외지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u>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 후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1. 부동산에 관한 거래 또는 행위. 다만,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과 이익금 유보액 범위 내(해외지점의 경우에는 인정된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 범위 내)에서 사무실 및 주재원의 주거용 부동산 등 해외에서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의 취득 등과 관련하여 행하는 부동산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증권에 관한 거래 또는 행위. 다만,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당해 주재국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와 당해 주재국내의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즉시 환금이 가능하며 시장성이 있는 증권에 대한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거주자에 대한 상환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대부. 다만, 외국환	1. 부동산에 관한 거래 또는 행위. 다만,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과 이익금 유보액 범위 내(해외지점의 경우에는 인정된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 범위 내)에서 사무실 및 주재원의 주거용 부동산 등 해외에서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의 취득 등과 관련하여 행하는 부동산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증권에 관한 거래 또는 행위. 다만,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당해 주재국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와 당해 주재국내의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즉시 환금이 가능하며 시장성이 있는 증권에 대한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거주자에 대한 상환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대부. 다만, 외국환

현 행	개 정 안
거래규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거래규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